

---

**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 
2차 모집(추가모집) 세부추진계획(안)**

---

**2024. 3.**

**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**  
식량자급관리단 식량공급팀

# I

##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(1차 모집) 개요

### ◆ 국산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·판매하고자 하는 제분·식품업체 지원

- ① 국산밀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, 국비 50% 지원(자부담 50%)
- ② 국산밀 원료 구매, 제품개발, 시제품 생산 및 판매, 소비자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수요 확대 유도

### □ 사업대상자
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- 생산자단체, 농업인의 공동조직,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
-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

### □ 지원자격

- 제품 원료로 국산밀을 사용하거나 희망하는 제분업체 또는 식품가공업체  
\*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조건

### □ 지원기준

-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국비 지원(자부담 1억 5천만원)  
- 사업 목적, 유형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규모 결정  
\* 제품개발 포함 시 우선순위로 정하고, 제품개발 미포함시 후순위 선정

### □ 예산 및 신청 분야

- 총예산 : 2,250백만원 \* 국산밀 활용 15개 제품군 × 150백만원  
- 원재료비, 제품개발, 포장 패키지, 디자인 개발 등 총 300백만원(자부담 포함)
- 신청분야 : 제면, 제빵, 기타 식품류  
\* 분야별로 최소 1~3개 업체 선정하되 분야별 업체 참여도에 따라 조정

### □ 1차 모집결과 : 11개사, 지원예산 1,506백만원

- 국산밀 소비 기여도가 높은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10위까지 최종사업자로 선정 \* 2개소 공동 10위로 총 11개사  
- 예비 사업자(2개소)는 추가모집 및 선정 후 중도포기, 예산 삭감 조정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예정

## II

## 2차 모집 개요

### □ 2차 모집 배경

- 당초 1차 모집 목표 대비, 사업신청 저조와 역량있는 사업체의 참여 부진으로 사업목표 예산 미달성
- 사업목표 대비 예산잔액을 고려하여, 모집분야를 다각화하여 사업자 2차 모집 추진

### □ 모집분야 다각화

- 1차의 국산밀 활용 식품산업 제조업 외 기타 산업부분 및 밀의 수요가 높은 제과제빵 및 일반식당 등 사업대상 분야 확대
  - 국산밀 활용 제품개발·출시 과정 등의 지원을 통해, ① 국산밀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② 외식업계의 국산밀 활용 및 일반소비자의 인지도제고와 소비활성화 지원

\* 1차 모집시 지원자격(제분업체 또는 식품가공업체) 기준 삭제

### □ 지원내용

- 산업화지원 및 소비활성화 2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품화 패키지 지원
  - 산업화지원 : 산업계 대량소비를 위한 국산 밀 제품개발 및 출시 지원
  - 소비활성화 : 소비자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 식품·외식업계 대상 국산 밀 활용 외식상품 개발, 홍보 및 판매 활동 등 지원

### □ 지원기준

- 사업잔여 예산 744백만원 중 모집규모에 따라 부분별 선정 개소수 결정
  - 산업화지원 : 1개 업체당 최대 국비 1.5억원 지원(국비50%, 자부담50%)
  - 소비활성화 : 1개 업체당 최대 국비 1.5억원 지원(국비50%, 자부담50%)

### □ 추진일정

- (3.13~3.25) 2차 공고(13일) → (3.26~3.29) 서면평가(4일) → (3.29) 서면평가 결과 발표 → (4.3) 발표평가·사업비심의 → (4.4) 선정발표

## 가 지원세부내용

## 1. 산업화지원

□ 사업대상자 : 개발예정 제품의 원료로 국산밀을 사용하는 식품류 제조 및 기타 분야 산업체

- ①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‘농업인 및 농업법인’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- ②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「농업식품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, 농업인의 공동조직,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
- ③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등
- ④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산밀을 활용하여 식품산업, 농산업, 의약 소재산업, 향장산업 등의 제품을 개발·판매하고자 하는 산업체 등

## □ 지원내용

- 국산밀을 사용하여 제품개발부터 판매까지 소요되는 직접 및 간접 비용 지원(국비보조 50%)

## □ 지원사항

- 사업규모 : 4.5억원 수준(3~4개 업체\* × 업체당 국비 1.5억원 수준)
- 지원사항 : 1개 업체당 최대 1.5억원 국비 지원(국비 50%, 자부담 50%)

\* 모집규모에 따라 산업화지원/소비활성화간 선정규모 결정

## □ 지원 항목

- 신청분야 : 제면, 제빵, 기타 식품류 및 기타 산업분야
- 원재료, 제품개발, 포장·디자인 개발, 홍보·마케팅, 수출지원 등 <붙임 6 참조>

## 2. 소비활성화

□ 사업대상자 : 국산밀을 활용하여 제과제빵 및 기타 외식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

- ① 1.산업화지원 대상자 항목의 ①~③에 해당하는 사업자
- ② 「외식산업진흥법」 제2조제3항에 근거한 외식상품의 개발·생산·유통·소비·수출·가맹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체 등

□ 지원내용

- 국산밀을 활용하여 “외식상품”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을 활용한 교육·홍보 및 기타 매출증대, 등에 필요한 직접 및 간접 비용(보조 50%)

□ 지원사항

- 사업규모 : 3억원 수준(2~3개 업체\* × 업체당 국비 1억원 수준)
- 지원사항 : 1개 업체당 최대 1.5억원 국비 지원(국비 50%, 자부담 50%)

\* 모집규모에 따라 산업화지원/소비활성화간 선정규모 결정

□ 지원 항목

- 원재료, 제품개발, 포장·디자인 개발, 홍보·마케팅, 수출지원 등 <붙임 6 참조>

< 산업화지원·소비활성화지원 제한대상 >

- 농림축산식품사업(융자 및 보조) 지원제한 대상 및 체납 업체
- 동일 제품으로 타품목(가루쌀·밀) 제품화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업체

## 나 신청·접수

### □ 사업자 공모

- 공모방법 : 공개 모집을 통한 사업자 공모
  - aT 홈페이지 게재, 보도자료 배포, SNS 등 통해 신청공고 홍보
  - 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 단체 홍보 요청

### □ 사업자 신청·접수

- 신청 주체 : 주관 업체
  - 연구 및 유통업체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
- 신청 기간 : 사업 공고일로부터 약 2주간(3.12~3.25)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(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이메일 제출)
  - 제출처 및 문의 : wheat\_soy@at.or.kr, 061-931-0771, 0772, 0773
- 제출서류 : 제출서류별 파일을 모아 압축파일로 제출
  - \* 각 파일이름은 제출서류 목록상 번호 + 이름 (예시 : 1\_사업신청서.pdf)
  - \* 압축파일 이름은 신청분야 및 신청자명(예시 : 산업활성화\_ABC기업.zip)

구분	제출서류
공통	① 사업신청서(양식1) 1부. ② 사업계획서(양식2) 1부. ③ 사업자등록증 1부. ④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.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양식4) 1부. ⑥ (해당시) 법인등기부등본/ 법인인감증명서 1부. ⑦ (해당시)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(자율양식)
산업화지원	⑧ 결산재무제표(2023년도) ⑨ 밀, 밀가루 매입(사용)실적(2022, 2023년) ⑩ (해당시) 기업참여의사 확인서(컨소시엄 참여기관)
소비활성화	⑪ 최근 2개년 매출액 증명서(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카드사 매출액, POS매출액 등). 외식업과 관련없는 매출은 불인정 ⑫ 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외식사업장 사진 및 '24.2월 POS매출액 ⑬ 외식사업자 사업장 등 판매시설 임차 증명서(계약서) 등

## 다 사업자 선정

### □ 선정 절차

○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토대로 사전 서류 검토 및 1차 서면, 2차 발표평가 후 사업자 최종 선정

① 사전 서류 검토는 사업대상자·지원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확인(aT)

② 1차 서면평가는 제출서류 근거 별도 구성한 평가위원회\*에서 진행  
- 최종 선정 규모 1.5배수 수준에서 고득점순 선정하되,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2차 평가대상에서 선정 제외

\* 식품연구, 홍보·마케팅, 경영 등 전문가 및 연계 기관 관련자 등 외부 3~5인 구성

③ 2차 발표평가는 업체 발표(5분), 인터뷰(10분)로 대면 평가하되, 서면 평가를 시행한 동일 평가위원회에서 진행

④ 최종 사업대상자는 2차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업체 예산 사용계획에 따라 총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선정 규모 결정  
- 중도포기·예산삭감조정 등 감안하여 예비사업자 선정

### □ 선정 목표(안)

○ 국산밀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 특화된 제품생산이 가능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최소 선정 목표 설정

- 해당 분야에 지원업체가 없거나 발표평가 60점 미만 시 고득점순 선정

### □ 평가항목

#### 1) 산업화지원

○ 1차 서면평가 : 정량평가(10점) + 정성평가(90점)

- (정량) 재무건전성(10)

- (정성) 업체 역량(15), 사업계획(35), 제품 경쟁력(20), 판매·유통(20)

○ 2차 발표평가 : 정성평가(100점)

- 1차 서면 정성평가 배점(90)에 사업 의지(10) 추가

<산업화 지원 서면·발표 평가항목 >

구분	평가 항목					배점	비고
재무건전성 자기자본비율*	50% 이상	30~49%	20~29%	10~19%	10% 미만	10	정량
	10	8	6	4	2		
업체 역량 (15)	적정 인력 및 시설 장비 보유 사업체 기본역량 등					7	정성
	유사 제품개발 경험 또는 노하우 보유					8	
사업계획 (35)	연내 제품 출시 가능성 및 예산 편성 적정성					12	정성
	- 예산 편성 시 항목별 배정 비율 적정성 등					5	
	- 제품 출시 후 홍보·판촉전 등 계획 여부					7	
	국산 밀 원료 매입 실적 및 향후 사용 확대 계획					15	
밀 제품 개발 관련 사전 테스트 및 동향 파악 등					8		
제품경쟁력 (20)	소비자 타겟 구체화 등 시장 경쟁성 확보 유무					7	정성
	기존 출시된 국산밀 제품과의 차별성					5	
	제품 내 국산 밀 함량 및 향후 소비 확대 가능성 (발표평가의 경우 샘플평가 3점 포함)					8	
판매·유통 역량 (20)	기존 거래 중인 유통망(온·오프라인 포함)					8	정성
	제품개발 후 판매 유통채널 확보(ex 공공급식, 온·오프라인 판매처, 로컬푸드 활용 등)					7	
	제품화 실현 시 생산 계획량, 판매 의지 등					5	
사업 의지 (10)	CEO의 본 사업 참여 의지 및 자료 신뢰성 등					5	정성
	사업 종료 후 운영계획 등					5	

\* 자기자본비율(%) : 자본총계/자산총계×100

\*\* 각 평가항목 당 5단계로 배점구분(매우우수, 우수, 보통, 미흡, 매우미흡)

\*\*\* “제품화경쟁력” 항목 중 발표평가 시 샘플 미제공하는 경우 샘플평가 점수 0점

\*\*\*\*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함

\*\*\*\*\* 서류·발표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## 2) 소비활성화

- 서면평가, 발표평가 동일 평가항목 사용
  - 정량 매출현황 10점, 기타 정성평가 90점

### < 소비활성화 서면·발표 평가항목 >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	비 고
사업현황(15)	외식사업 및 판매 현황	5	정성
	매출현황	10	정량
제품화 가능성(35)	개발제품의 우수성·차별성 (샘플평가 3점 포함)	15	정성
	판매/마케팅 방법의 적정성	10	
	판매 제품의 사업성	10	
기대효과(30)	판매제품 확장 가능성	15	정성
	국산밀 소비활성화 기여	15	
정책목적성 및 성실성(20)	사업목적 부합	10	정성
	자료작성(발표내용)의 성실성	10	
합 계		100	

\* 각 평가항목 당 5단계로 배점구분(매우우수, 우수, 보통, 미흡, 매우미흡)

\*\* “제품화가능성” 항목 중 발표평가 시 샘플 미제공하는 경우 샘플평가 점수 0점

\*\*\*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함

\*\*\*\* 서류·발표평가 결과 평가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### < 소비활성화 계량평가 평가점수 >

○ 매출현황				
연매출액	10억원 이상	10억원미만 ~5억원 이상	5억원미만 ~3억원이상	3억원미만
평가점수	10	6	4	2

## 마 사업 운영관리

### □ 사업자 약정

- (약정대상) aT↔지원사업자간의 약정서 작성
- (약정기간)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까지(종료 예정일 : '23.10.31)
- (약정해지) 업체 사유로 약정해지 시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참여 제한

### □ 사업 이행관리

- (착수 보고회) 사업추진 방향, 예산 운영기준, 일정 등 안내
- (선급금 지급) 사업비의 50% 이내에서 선급금 요청 시 지급
  - (지급보증보험증권) 선급금 요청 시 사업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가산한 2025년 4월까지 지급보증보험증권 설정을 통해 국고보조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 방지
  - 사업비 최대 25% 이내는 약정체결 후 요청 시 지급, 사업비 최대 50% 이내는 제품화 이후 제품출시 및 판매가 확정된 이후 지급
- 지원 사업자와 사업 운영기관(aT)의 진행 기간 내 월별 적절한 조치
  - 초기에는 진행률 점검, 후기에는 출시현황 및 사업비 진행 등 확대 점검
  - \* 착수 보고 1회, 개발 중간 1회, 8월 이후 월 단위 보고, 최종보고 1회
  - 중간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후 문제해결(전문가 연결 등) 등 조치
  - 연내 제품화 불가 판단 시 사업 조기 종료 등 검토
-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조정 및 전문업체 통해 정산 관리
  - 일부 업체 예산 불용 예상 시 예산 추가 필요업체 중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업체에 우선 배정하되 필요 시 업체별 지원한도액 5천만원 추가
  - 항목별 적절한 정산관리를 위해 회계 전문업체를 통해 업무 일부 위탁
- (최종 정산)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에 따라 최종 사업비 산출
  - 총 1억원을 초과한 사업비는 제품출시 여부에 한해 정산
  - 최종 정산액의 국비 지원액이 선급금 대비 적은 경우에 예산 환수

## □ 사업 마무리

-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 및 아래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누락사항 없이 제출될 경우 사업 정산 및 종료
  - (제품 기본정보) 제품명, 원재료 함량(국산밀 사용 비중 등), 제품 사진
  - (제품 유통정보) 주요 판매처, 출시일, 생산량 및 판매량
  - (기타 사항) 소비자 반응, 제품 출시 주요 성과 및 사업 만족도 등 자율 기술
- \* 정산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양식은 추후 선정사업자에게 별도 안내

## 마 사업 실적관리(안)

### □ 홍보 지원

- 사업 이행 점검을 통해 홍보 현장 모니터링 및 연계 지원방안 검토
  - 시제품 품평회, 팝업스토어 운영, 제품 출시 행사, 식품 박람회 등
- 제품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출시제품 전 과정의 단계별 홍보 지원
  - 사업 관심 제고를 위해 언론 보도자료 배포, aT SNS 등 선정업체 홍보
  - 시제품 단계에서 업체 요청 시 aT 자체 품평회, 현장 팸투어 등 추진
  - 출시제품은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하여 대외 홍보

시기	추진내용	세부 내용
연중	현장 모니터링	업체별 홍보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
3월	선정 결과	사업자선정 업체(품목) 결과 보도자료 배포
6~8월	시제품 홍보	제품 홍보희망업체 대상 시민 등 현장 팸투어
7~9월		aT 직원 등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 품평회
10월		온·오프라인 유통업체 MD 등 제품 설명회
11월	출시제품 홍보	박람회 등 대외 행사와 연계하여 출시제품 홍보
12월		시제품 평가 우수제품 중심 기획 기사 등 홍보

□ 실적 부진업체 조치

- (약정 해지) 지원금(선급금) 전액 회수 및 차년도 참여 제한
  - 사업 기간 내 본 사업 약정 위반
  - 사업자 사유로 중도 포기 등으로 약정 해지 또는 해제원을 제출할 때
  - 사업 이행관리 결과 사업자가 사업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- (제한 관리) 사업실적 부진업체는 내년 사업자 평가 시 불이익

구 분		사 례
감점	5점	예산 10~20%를 9월 이후 조정 요청 또는 미사용
	10점	예산 21~40%를 9월 이후 조정 요청 또는 미사용 제품 미출시(시제품 생산)
신청 불가		공사 등 예산 지원받은 항목에 대해 중복 신청(예산 회수) 예산 41% 이상을 9월 이후 조정 요청 또는 미사용





**1 제품화 개요**

제품명 :

제품규격 :

원재료 함량(안) \* 전체 원재료 내 국산밀 및 주요 부재료 함량

○

○

제조업체 :

생산 계획량 :

출시예정 : 월

주요 유통채널

○

○

제품 주요 특징

○

○

○

○

기타 사항(위 명시되지 않은 사항)

○

○

○

○

2

제품화 추진

목적 및 필요성

- 
- 

주요 추진전략·방법 및 체계 \* 자율 기술

기대 효과

- 
- 
-

**3****제품화 세부 추진계획** 원재료 조달

- ( 월)
- ( 월)
- ( 월)

 제품개발

- ( 월)
- ( 월)
- ( 월)
- ( 월)

 포장 패키지

- ( 월)
- ( 월)
- ( 월)

 홍보 마케팅

- ( 월)
- ( 월)
- ( 월)
- ( 월)

 기타 추진사항

- ( 월)
- ( 월)
- ( 월)
- ( 월)

**4**

**제품화 추진 일정**

사업 착수 후 아래 월별 추진 일정에 의거 진행률 등 확인

- ③ 제품화 세부 추진계획 내용 기반으로 작성

주요 내용	월별 추진 일정									
	3	4	5	6	7	8	9	10	11	
작성 예) 제품개발 착수										
작성 예) 원재료 구입										

5-1	사업추진 적정성
업체 역량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 인력 및 시설 장비 보유 사업체 기본역량 등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사 제품개발 경험 또는 노하우 보유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사업 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내 제품출시 가능성 및 예산 편성 적정성 <input type="checkbox"/> ① 예산 편성 시 항목별 배정 비율 적정성 등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제출 출시 후 홍보·판촉전 등 계획 여부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산밀 원료 매입 실적 및 향후 사용 확대 계획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	<input type="checkbox"/> 밀 제품개발 관련 사전테스트 및 동향 파악 등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
5-2

사업추진 적정성

제품 경쟁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 타겟 구체화 등 시장 경쟁성 확보 유무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 출시된 국산밀 제품과의 차별성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품 내 국산밀 함량 및 향후 소비 확대 가능성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판매 유통 역량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 거래 중인 유통망(온·오프라인 포함)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품개발 후 판매 유통채널 확보(공공급식 등)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품화 실현 시 생산 계획량, 판매 의지 등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

5-3 사업추진 적정성	
사업 의지	<input type="checkbox"/> CEO의 본 사업 참여 의지 및 자료 신뢰성 등 ○ ○ ○
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종료 후 운영계획 등 ○ ○ ○
기타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위 명시되지 않은 사항 자율 기술 ○ ○ ○

## 6

## 예산사용 계획서

총 사업비	국비지원(50%)	자부담(50%)	자부담 초과분
원	원	원	원

(단위 : 천원)

기본항목	세부항목	산출근거	비용	합계	비중(%)
총 사업비					
원재료비					
	소계				
제품개발비					
	소계				
포장패키지					
	소계				
홍보마케팅					
	소계				
수출 등 기타					
	소계				

\* 부가세 제외금액 작성

**▶ 소비활성화 개발제품 개요**

- 개발 제품군 :
- 개발 제품명(가제) :
- 국산밀 사용량 :
- 주요판매처 :

**1. 일반현황** 일반현황(사업자소개)

## ○ 주요사업 현황

- 주요사업, 사업장 사진, 판매 제품 등 사진 포함

- 사업장 입지 및 유동인구 등 설명 포함

## ○ 매출규모

**2. 제품개발 사업 소개** 시장분석

## ○ 주요고객층 분석 등

 개발제품의 우수성 등

○

국산밀 사용량

○

사업운영 계획

○

사업성 분석

○ 계량적 분석

○ 비계량적 분석

### 3. 기대효과

기존 사업과의 연계성

사업확장성

국산밀 소비활성화 기여

### 4. 기타사항

## 5. 예산사용 계획

총 사업비(A+B)	국비지원(50%, A)	자부담(50%, B)	자부담 초과분
원	원	원	원

(단위 : 천원)

기본항목	세부항목	산출근거	비용	합계	비중(%)
총 사업비					
① 원재료비		물량×단가×비율			
	소계				
② 제품개발비					
	소계				
③ 포장패키지					
	소계				
④ 홍보마케팅 및 판매					
	소계				
⑤ 수출					
	소계				

\* 부가세 제외금액 작성

**[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]**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자급관리단은 국산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**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**

- 공모 접수, 결과발표, 사업 운영현황 파악 등
- 정책 만족도 등 설문조사

**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**

<b>필수항목</b>	성명, 이메일주소, 휴대전화번호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**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**

- 10년

4. 상기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거부 시, 평가 결과 안내 불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, 정보 주체가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고,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)

**5. 제3자 제공(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,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)**

- 제공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, 지자체, 용역사 등
- 제공목적 : 정책 만족도 조사, 사업 운영현황 파악, 홍보 등
- 제공항목 :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- 이용기간 : 1년 이내
-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동의 거부 시 홍보 및 컨설팅 등 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)

소속 : \_\_\_\_\_ 성명 : \_\_\_\_\_ (인/서명)

**붙임 5****2024년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약정서(안)**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이하“공사”)와 2024년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(이하 “사업”) 선정업체 \_\_\_\_\_(이하 “사업자”)는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한다.

**제 1조 (목적)**

“공사”와 “사업자”는 「2024년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」수행에 있어 거래내용,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 및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다.

**제 2조 (약정개요)**

구분	세 부 내 용		
개발 제품군		제품명	
약정금액* (총사업비/원)	원	국고보조금(50%)	원
		사업자부담금(50%)	원
약정기간	약정체결일로부터 ~ 사업 종료일(2024.10.31 목)		

\* 약정금액은 부가세 제외 기준이며, 제 4조 제 ⑤항에 의거 최종 정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

\*\* 제품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약정기간은 2024.11.29.(금)까지 연장 가능

**제 3조 (지원목적 및 지원내용)**

동 사업은 국산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산밀 원료 구매, 제품개발, 시제품 생산 및 판매, 소비자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가공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으며,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.

항목	세부 지원 내역 예시
원재료비	국산밀(밀가루) 구입, 기타 부재료 구입, 가공비, 작업비 등
제품개발비	재료구입(소모품), 실험연구 의뢰, 연구인력(임시직), 실험설비 임차 등
포장 패키지	포장디자인, 내외장 포장재 개발, 제품 형태(틀) 개발, 의장 등록 등
홍보 마케팅	신제품 홍보, 소비자 평가, 유통업체 마케팅, 팝업스토어 운영, 홍보 인건비 등
수출 지원	해외시장 조사, 해외 박람회 참가, 바이어 판촉(현지화), 수출인증 등
업무협의회비	총예산 10% 이내 국내 출장비 지원,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
기타 항목	위 항목 외 업체 요청 사항 중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(사전 협의)

#### 제 4조 (사업비 집행 및 정산)

① “공사”는 “사업자”에게 약정금액(총 사업비) 중 국비 지원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총 2회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다.(약정 및 지급보증보험 제출 후 “사업자”가 선급금 신청 시 최대 25% 내, 제품화 이후 제품출시 및 판매가 확정된 이후 최대 50% 내, 최종 정산이 완료된 후 4분기에 잔여분)

② “사업자”는 총 사업비 중 선급금(최대 50%)을 신청할 경우, “지급보증보험증권”을 2023년 4월까지로 설정 및 발급받아 “공사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“사업자”는 선급금을 지급받을 경우, 동 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을 정하여 운영하며, “사업자”의 보조금 통장은 아래와 같다.

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

④ “사업자”는 보조금을 동 사업의 목적 및 지원내용, 약정기간 내의 사용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.

⑤ “공사”는 “사업자”의 집행내역을 근거로 집행내역 중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한 시점에 최종 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“사업자”의 총 집행액(원단위 이하 절사)을 산출하고, 총 집행액이 선급금을 미달한 경우에는 “사업자”가 교부받은 보조금 중 총 집행액의 50%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수하며, “사업자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“공사”는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“사업자”의 총 집행액이 약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전체 사업예산 중 사용가능한 보조금이 발생한 경우, '24년도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에서 명시한 한도금액 내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5조(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)

“공사”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사용·관리·정산을 하는데 있어 e-나라도움을 사용하며, “사업자”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e나라도움 집행관리·감독 등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제 6조 (사업자의 의무)

① “사업자”는 본 사업에 있어 사실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 및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, 정산지침, 보조금 법령 및 “사업자”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.

② “공사”는 동 사업의 이행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·수시 실적보고서 제출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“사업자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“사업자”는 동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 사업결과는 “공사”에서 요청하는 별도 제출양식에 따른다.

## 제 7조 (공사 기본의무)

“공사”는 본 사업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“사업자”의 업무상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.

## 제 8조 (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)

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사용이 확인된 경우, 최종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도 “공사”는 즉시 지원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하고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, 보조금 법령, 재정사업관리규정 등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
## 제 9조 (약정해지 및 제재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본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1. “사업자”가 본 약정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
  2. “사업자”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해지 또는 해제원을 서면으로 제출한 때
  3. “공사”가 사업이행 중간평가 결과 “사업자”가 동 약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사업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판단한 때
  4. 천재지변 등으로 본 사업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
- ② 위 조항의 사유로 동 약정을 해지한 때 “사업자”는 차년도 동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, 추후 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“사업자”의 사유로 약정을 해지 한때에는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.

#### 제 10조 (분쟁의 해결)

- ① 본 약정서의 효력은 “공사”와 “사업자”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 3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- ②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“공사”와 “사업자”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.

#### 제 11조 (특약 및 기타사항)

- ① 본 사업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, “사업자”는 타인의 제품이나 아이디어 등을 모방하여 표절·무단 도용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, 권리 침해로 인한 모든 책임은 “사업자”에게 있다. 이에 “공사”는 침해 사실의 소명 또는 시비가 발생한 경우, 제 8조 내지 제 9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본 약정이행을 위해 “공사”와 “사업자”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
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해 “공사”와 “사업자”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4. 00 . 00

공 사		사업자	
공 사 명	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	사업자명	
사업자번호	106-82-00944	사업자번호	
주 소	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	주 소	
대 표 명	(인)	대 표 명	(인)

**□ 유의사항**

- 신청업체는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본 지원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함
- 사업비 내역서는 최종 선정 후 약정서 체결전까지 세부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음
- 최종 정산 시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 모두를 정산대상으로 함
- 산출내역 작성 시 단가, 건수, 인원수,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
-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 불가하며, 정산 시에도 불인정 처리
- 산정기준(안)의 용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사업의 목표, 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이 감액 및 조정될 수 있음
-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금액 제외 분으로 산정함

**□ 사업비 정산대상 항목**

- 사업비 정산대상 항목은 국비 및 자부담 포함한 총 사업비 금액 - 총 사업비 중 정산인정금액 총액의 50%를 국비 지원
- 자산성 물품 구입 및 지원불가 항목을 제외하고, 사업자는 정산가능 항목(①~⑤)에 맞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실시
- 집행 세부내용은 공사와 사전협의 필요
- 사업계획 및 사전협의된 내용 외 집행건은 정산 불가
- 지원가능 항목별로 정산인정 집행금액의 합계가 정산인정 총사업비의 80%를 넘을 수 없으며, 최소 2가지 항목 이상 집행 필요

**□ 사업비 정산 불인정 사항**

-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
-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
-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

-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
-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·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
-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
-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(발주기관과 위탁기관 상호 국세청 미신고 전자세금계산서)
- 용역비 중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, 미작성된 경우

〈 사업비 지원항목 등 세부사항 〉

구 분	세부내역	
정산가능 항목 (외부 지출건)	① 원재료비	국산밀 구입, 기타 부재료 구입 등
	② 제품개발비	디자인·설계 용역, 연구용역, 실험설비 임차, OEM생산 등
	③ 포장패키지	포장디자인 용역, 내외장 포장재 개발, 포장재 제작 원재료 물품구입, 의장 등록 등
	④ 홍보마케팅 및 판매	시장분석용역, 신제품 홍보, 소비자 평가, 유통업체 마케팅, 미디어 홍보용역 등
	⑤ 수 출	해외시장 조사용역, 수출인증 등

한도제한 항목	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②~⑤ 항목관련 인건비</li> <li>· 총사업비(자부담포함)의 30% 이내</li> <li>· 근로계약서(약정일 이후),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</li> <li>· 관련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내역 미제출시 감액 후 정산</li> </ul>
	출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총 사업비의 10% 이내 국내·외 출장비 지원,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(초과집행시, 여비규정한도내 정산)</li> </ul>
지원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사 지원 '24년 가루쌀, 두류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품목</li> <li>· 원재료중 수입밀 및 수입밀 포함 소재류 등 원재료 구매</li> <li>· 기존 임직원 인건비, 주류(원재료로 불인정), 이윤, 시설설치, 사무실·시설·토지·차량 등 장기임차(사업 기간 외의 임차비 지원 불가), 자산성 물품(컴퓨터, 노트북, 프린터, 카메라, 전화기 등 사업 종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) 구매 등</li> <li>· 식비, 다과비, 업무협의비, 사무실비품, 기념품비 등</li> <li>· 세차비, 차량 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유류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</li> </ul>	

구 분	세부내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외수출 관련 물류비</li> <li>• 신청업체 모기업 및 계열사 물품구입/용역 사용비(내부간거래불가)</li> <li>• 음식류 배달비, 할인차액, 쿠폰지원 등</li> <li>• 기타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 및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</li> </ul>

제출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통) 구매내역 확인 가능한 카드 영수증 또는 (전자)세금계산서, 계좌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 등</li> <li>• (원료곡 구매) 국산밀 구매 및 원산지(국산) 증빙(국산이 명백히 확인 되는 건에 한해 정산인정)</li> <li>• (OEM) OEM계약서, 대금지불 증빙 등</li> <li>• (인건비) 고용계약서, 신분증, 이체내역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 등</li> <li>• (용역비) 디자인 개발 등 외부업체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, 계약서, 용역 사업자등록증, 지출증빙, 결과물(결과보고서, 사진)등 제출 필수</li> <li>• (강사료) 강사프로필, 강사료수령영수증, 이체내역확인증, 원천징수 영수증, 현장사진, 강의안 등</li> <li>• (기 타) 공사와 사전협의 되어 정산증빙으로 인정된 증빙서류 등</li> </ul>
------	--